

“열린 법정(open court)” 대상 사건 소개

2026. 5.

서울행정법원

I. 2026. 6. 23.(화) 제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

1.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03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원고 (주)알○○재생의학연구소 vs.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일 : 2026. 6. 23.(화) 14:00 B201호 대법정

가.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줄기세포 치료기술 연구, 보관, 치료제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증 무릎 퇴행성관절염 관련 줄기세포 치료제인 ‘이 사건 의약품’을 개발함
-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하여 3상 임상시험을 마치고, 2021. 8. 피고에게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함(이하 ‘1차 거부처분’)
- 원고는 2024. 3. 다시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25. 8.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자(이하 ‘2차 거부처분’), 2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

나. 관계 법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 ②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품

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1.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4.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위해성 관리계획
5.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의 부분을 구성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에 필요한 자료. 다만,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 인증서 또는 신고수리서로 갈음할 수 있다.
6. 그 밖에 허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신고(품목신고를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을 받거나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6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될 것
2. 의약품등의 품질이 인정될 것
3. 제1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의 경우 동등성이 인정될 것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①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계획서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의2(기본 원칙) ①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임상시험계획을 검토하는 기본 목적은 임상시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② 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분류되고 순차적으로 실시되지만, 중첩되어 실시될 수도 있다. 제1상 임상시험에 대한 검토는 안전성 평가를 위주로 하고, 제2상 및

제3상 임상시험에 대한 검토는 안전성·유효성과 과학적 측면을 포함하여 의약품 품목허가 기준에 적합한 자료생성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다.

◆ **첨단바이오횰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8조(임상시험 자료 요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임상시험 자료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적합한 자료로,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사항, 각 기관별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일자별 심의결과 및 최종 임상시험계획서 등이 첨부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9조(임상시험 자료 심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바이오횰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4. 평가 : 제출된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검토 결과 해당 적응증 등에 대하여 임상적 유의성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치료적확증 임상시험의 경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전 설정된 통계분석계획에 따라 유의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39조(재신청서류의 처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신청서(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심사의뢰서가 반려된 품목으로서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완하여 반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신청된 품목은 반려 전까지 심사 완료된 자료 이외의 자료만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 사안의 쟁점

○ **1차 거부처분에 관한 불가쟁력 및 사법심사의 범위**

- 피고의 주장: 1차 거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품목허가 재신청 단계에서는 반려 전까지 심사 완료된 자료 이외의 자료만을 검토할 수 있음. 따라서 원고는 1차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임상시험결과 및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관한 판단 자체를 다툴 수 없고, 2차 거부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도 1차 거부처분 사유(임상적 유의성 부족)가 재신청 단계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로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에 한정되어야 함
- 원고의 주장: 2차 거부처분은 1차 거부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1차 거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 내부규정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법상 권리행사의 범위 또는 법원의 심리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 **2차 거부처분이 사실오인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증명됨. 그런데도 피고는 사후적·임의적으로 ‘임상적 유의성’ 기준을 요구하면서, 특히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기존 치료제 대비 차별성·우월성의 존부’ 등을 품목허가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였고, 결국 임상적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 하에 2차 거부처분을 하였음
- 피고의 주장: 관련 법령에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두 개념은 구별되는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상적 유의성이 인정된다거나, 품목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임상적 유의성의 구체적 기준은 의약품의 특성, 적응증, 중증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의 행정규칙, 내부 매뉴얼 등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사안마다 전문가들의 사후적·의학적 판단을 종합하여 결정됨. 또한 원고가 제출한 보완 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의약품의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할 수 없음

○ **2차 거부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첨단바이오횰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19조 제4호는 사전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에서 설정된 검증시설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경우,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됨(후문의 “유의성”은 ‘임상적 유의성’을 의미). 실제로 피고는 그동안 다수 사례에서 사전승인된 임상시험계획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면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하여 품목허가를 승인함. 2차 거부처분은 피고의 행정관행에 배치되는 것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반함
- 피고의 주장: 위 규정은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서 사전 설정된 통계분석계획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임(후문의 “유의성”은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 또한 피고가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고, 오히려 양자가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품목허가 승인을 해옴

○ **2차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그 시험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면 품목허가 요건인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함. 원고는 그 신뢰에 기초하여 수년간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임상시험계획 승인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임상적 유의성' 기준을 들어 품목허가 여부를 판단함. 또한 피고는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구조 개선 자료 등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품목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도 2차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신뢰를 준 바 없음. 임상시험계획 승인서에도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품목허가는 별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애초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의 목적은 시험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 최종 품목허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

○ 2차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2차 거부처분으로 침해되는 공익은 없는 반면, 오히려 환자들은 우수한 의약품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 사건 의약품 개발에 16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불이익이 부과됨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환자들이 임상적 유의성이 인정되는 다른 의약품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됨

라. 선정이유 및 변론 진행 계획

-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행정청에게 부여된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그에 관한 법원의 사법통제의 의미 등에 관하여 고민할 기회를 제공함
-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음
- 쌍방 소송대리인이 PPT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

2.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원고 이○○ vs. 피고 산업통상부장관

기일 : 2026. 6. 23.(화) 15:00 B201호 대법정

가.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 각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
 - ① 피고 작성의 “삼성전자(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결과” 3쪽 이하에 기재된 “전문위원회”의 공식 명칭과 그 전체 구성원의 이름, 소속 및 임기
 - ② 위 판정 당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이름, 소속, 임기 및 소속 전문위원회
 - ③ 2015. 1.부터 현재까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이름, 소속, 임기 및 소속 전문위원회
- 피고는 위 ①과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반도체 분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라고 밝히고, ②와 관련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청구대상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아래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① 피고 작성의 “삼성전자(주)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결과” 3쪽 이하에 기재된 “전문위원회”의 전체 구성원의 이름, 소속 및 임기
 - ② 위 판정 당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이름, 소속 및 임기
 - ③ 2015. 1.부터 현재까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체 구성원 중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명·위촉된 자의 이름, 소속 및 임기

나.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 4.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 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3.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 2. 지식재산처장

다. 사안의 쟁점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

- 원고의 주장: 청구대상정보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 또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인적 구성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적 구성이 공개되어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의 주장: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판단하는 기관으로, 청구대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로비나 여론 등 영향으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저해되어 전문성에 기한 공정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

- 원고의 주장: 청구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및 마목에 정한 비공개예외사유에 해당함
- 피고의 주장: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대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항 마목에 해당하지 않음

라. 선정이유 및 변론 진행 계획

-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법적 평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쌍방 소송대리인이 PPT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 [끝]

II. 2026. 6. 24.(수) 제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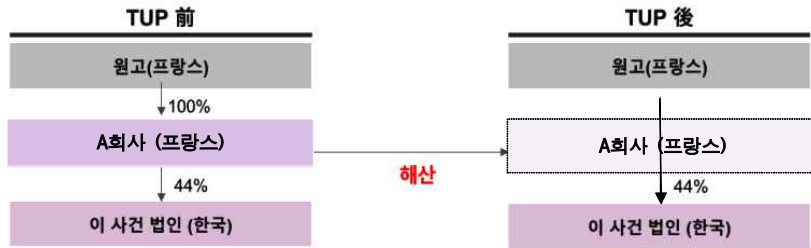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소시에떼 드 파○○○○○ (이하 생략) vs. 피고 삼성세무서장
기일 : 2026. 6. 24.(수) 14:00 B201호 대법정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인 다국적기업 생○○ 그룹의 지주회사로 역시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인 A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보유한 단독 주주
- A회사는 대한민국 내국법인 생○○○○○○○○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중 ○○○주(지분율 약 44%, 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던 중, TUP(Transmission Universelle du Patrimoine, universal transfer of the assets) 제도*에 근거해 해산
- * 주: TUP 제도란 프랑스 민법 1844-5조 3항에 근거한 완전자회사의 완전모회사에 대한 자산의 포괄적 이전·해산 절차로, 완전모회사인 단독 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완전자회사는 자산 전부를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별도 청산 없이 해산·소멸
- 원고는 A회사의 해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A회사 자산을 모두 포괄적으로 이전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TUP 이전'), 이 사건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계상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A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과세(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① 이 사건 TUP이전은 법인간 합병에 준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라 볼 수 없고, 법인 해산에 따라 외국법인의 청산소득만이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주위적 주장), ② 설령 양도가액을 산정하더라도 원고가 계상한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예비적 주장)는 이유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 사건 TUP 이전 도해



2.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법률적 쟁점

가. 프랑스 민법상 TUP제도에 따라 해산된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이 외국법인인 모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법인간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 준하여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주위적 쟁점)

나.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예비적 쟁점)

4. 선정이유 및 변론 진행 계획

가. 주위적 쟁점과 관련하여, 국경을 넘는 자본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오늘날 TUP 제도와 같은 외국의 고유한 법제도를 우리 법체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여 이해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우리법상 정당한 과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안임

나. 예비적 쟁점과 관련하여, 실제 외국의 고유한 법제도에 따른 거래에 우리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산정 등 구체적인 법적용의 문제를 고민해 볼 수 기회를 제공

다. 쌍방 소송대리인이 PPT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 [끝]

Ⅲ. 2026. 6. 24.(수) 제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33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디○○○(주), 유○○ vs. 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일 : 2026. 6. 24.(수) 15:40 B201호 대법정

1. 사안의 개요

- 원고 회사는 화학제품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대기환경 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19. 4. 3. 제정되고 2020. 4. 3. 시행되면서 오염물질 총량기준 규제방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가 예정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은 그 배출총량 기준을 미준수하는 경우 환경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고 배출총량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환경설비 투자가 필요하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환경오염물질 저감 연구기술개발의 일환인 ‘습식 탈황장치 연계형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기술 개발’ 과제[‘이 사건 과제’. 과제 수행기간은 총 60개월(1단계 15개월, 2단계 45개월)]의 주관연구기관이 되었고, 원고 회사 대표자인 원고 유○○은 연구책임자가 됨.
- 이 사건 과제에는 주식회사 A(오존발생기 관련 지원 등), B 주식회사(설비, 공정 관련 지원 등), ○○대학교(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 저감반응기구 분석 등), C 주식회사(장소 제공 및 관리, 발전설비 상용화에 대한 의견제시 등)가 참여하면서 각 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이 사건 과제 참여기관들과 함께 1단계 협약에 따른 과제를 완료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이 사건 과제 ‘계속’ 판정을 받은 다음 2단계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음
- 1단계 과제 수행 시 C 회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의 발전시설(2호기)을 테스트베드로 이용하였는데 이후 위 테스트베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 발전소의 4호기로 테스트베드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테스트베드 변경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2단계 과제수행기간 내 과제를 수

행하지 못하게 됨

- 피고는 이 사건 과제가 중단된 것은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것이라는 사유로, 2025. 10. 29.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2년 처분 및 원고 회사 15억 2,000만 원, 원고 유○○ 3억 400만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들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② 과제 중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제재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 제1항 관련)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각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제32조제1항제4호	2년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감경기준

2. 개별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 1)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 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	------------------------------

3. 법률적 쟁점

- 가. 원고들이 과제수행기간 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과제수행을 포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처분사유 인정 관련)
- 나.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
 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량권의 일
 탈·남용 관련)

4. 선정이유 및 변론 진행 계획

- 가. 처분사유 관련, 환경규제 강화 법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실
 시된 전문적인 국가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포섭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관한 변론 및 증거조사
 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볼 수 있음
-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제재를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관한 제반 사정들에 대한 공방을 접할 수 있음
- 다. 쌍방 소송대리인이 PPT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임 [끝]